

EVERRICH(인터넷) 자유적금 특약

제1조 【적용범위】

EverRich (인터넷)자유적금(이하 “이 적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에 있어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, 적립식예금 약관 및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 【가입대상】

-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다. 단, 법인(단체)의 경우 축하이자, 특별중도해지, 여행서비스 이용은 불가하다.
- ② 이 적금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가입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확인 후 가능하다.
- ③ 1인 1계좌에 한하며, 생계형 및 세금우대 적금으로 가입 가능하다. 단, 인터넷뱅킹을 통해서서는 생계형으로 가입할 수 없다.

제3조 【가입기간 및 저축한도】

- ①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 일단위로 만기 설정 가능하다.
- ② 저축한도는 1일 1만원이상 10원 단위로 적립하며, 월간 적립금 한도액은 500만원이다. 단, 이 적금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가입한 경우의 월간 적립금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한다.

제4조 【이자지급 및 계산방법】

- ① 일적수 누계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만기일에 지급한다.
- ② 이 적금 만기해약 가입자에 대하여 우대이자를 지급하며, 계약기간중에 결혼한 가입자에 대하여 축하이자를 지급한다.
- ③ 우대이자 및 축하이자는 반드시 만기해약한 가입자에게 지급하며, 적용 기간은 가입일자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이다.
- ④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해당 휴일은 만기이율 적용(우대이율 또는 축하이율은 적용하지 않음)한다.
- ⑤ 일반중도 또는 특별중도 해약시 가입후 30일 미만 경과분과 예치기간 30일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.

제5조 【특별중도해지】

- ① 이 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주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체국창구에서 가입일로부터 6개월경과후 중도해지를 신청할 때에는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 1. 예금주의 결혼(또는 허니문 여행)에 따른 이 적금의 중도해약의 경우
 2. 예금주의 자유(배낭)여행에 따른 이 적금의 중도해약의 경우
 3. 예금주의 어학연수에 따른 이 적금의 중도해약의 경우

- ② 위의 각 호의 경우 예금주가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 전후에 우체국에 지급 청구하여야 한다.

제6조 【적립금 납입방법】

- ① 적금의 적립금은 창구, 자동이체, 인터넷뱅킹, 폰뱅킹, 또는 자동화기기(CD/ATM기 등)를 통하여 적립한다. 단,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한 고객은 창구를 통한 납입은 불가하다.
- ② 적립방법은 적립금 한도액범위 내에서 납입일자, 납입횟수, 납입금액 등을 정하지 않고 자유적립식으로 적립한다.

제7조 【정보제공】

적금 가입시 가입절차에 의한 고객정보제공에 동의한 예금주의 성명, 휴대폰번호, 전화번호, e-mail주소 정보가 제휴은행사에 제공된다.

제8조 【적금 운영시간】

이 적금을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할 경우 08:00~22:0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. 다만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.

제9조 【적금의 해약】

- 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가입한 이 적금의 해약(만기, 중도)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약하는 것이 원칙이며, 지급금액은 모계좌로 이체된다.

- ② 계약기간 중 결혼한 가입자는 만기해약시 결혼증명 관련 서류와 무통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창구에 지급 청구한다.
- ③ 특별중도해약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 전후에 우체국 창구에서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의 사유발생일은 결혼의 경우 결혼일자, 여행(연수) 서비스는 출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

제10조 【전환서비스 제공】

- ① 이 적금 만기 해약일 당일에(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익영업일 22:00까지) 챔피언정기예금 또는 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. (단, 중도해지,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전환 불가)
- ② 이 적금은 해약 실지급액 범위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며, 1회에 한하여 전환가능하다.
- ③ 이자율은 만기해약일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(인터넷뱅킹 이용시에는 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고시이율) + 0.05%P 적용한다.

제11조 【통장의 발급】

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가입한 적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.



부 칙

이 특약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